

# 순천대학교 논문집편집위원회규정

제정 1996. 6. 24

개정 2007. 6. 26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(이하 "이 대학교"라 한다)의 대학 논문집 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순천대학교논문편집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07. 6. 26.)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논문 투고와 심사에 관한 사항 (개정 2007. 6. 26.)
2. 투고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
3. 논문집 체제·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
4. 기타 필요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과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07. 6. 26.)

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. (개정 2007. 6. 26.)

제4조(위원장 등의 임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 하고,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 되,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6조(간사) ① 위원장을 보좌하여 논문집 발간을 위한 원고접수·체제검토·원고보완의뢰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07. 6. 26.)

제6조의2(업무주관) 위원회운영과 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은 기획처에서 담당한다. (개정 2007. 6. 26.)

제7조(시행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 (1996. 6. 24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7. 6. 26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